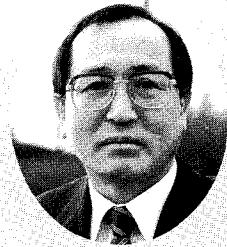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ESSD와 환경경영—
〈4〉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원장

목 차

- I. 지속가능한 개발이념과 실현수단
- II. 지구환경문제와 기업의 당면과제
 - 1. 환경문제와 기업
 - 2. 환경경영의 도입
 - 3. 환경 및 경영요소의 통합
- III. 환경경영 표준과 유사프로그램
 - 1. 환경경영규격의 생성배경
 - 2. 국제 규격의 종류 및 내용
 - 3. 다른 환경경영 원칙 및 프로그램
 - 4. 국내 제도 및 운영 실태
 - 5. ISO 14001/14004/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비교
- IV. 환경경영도입에 따른 기본전제
 - 1. 환경경영의 기본원리와 도입에 따른 이점
 - 2. 환경경영의 도입에 따른 실천전략
 - 3. 성공적인 환경경영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과제
- V. 참고문헌

2.2 EU이사회 규칙-EMAS

EU이사회규칙 EMAS는 BS 7750이나 ISO 14001과는 다른 법률이다. 법률이면서도 강제성 없이 자율적인 참여형태를 띤다. 본래는 강제성이 목표였지만 가맹국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우선 5년간 자율적인 참여 형태로 운영되게 되었다.

EMAS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경영체제 구축, 환경대책의 수행, 수행결과를 ‘공인환경감사인’에 의해 검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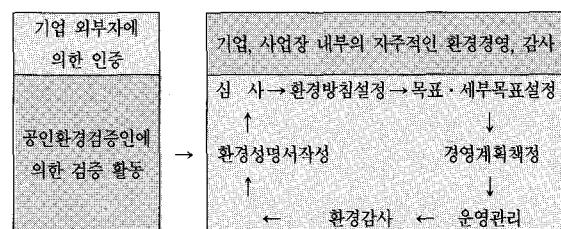
「환경 성명서」로서 공개를 하는 것이다. 단 EMAS는 EU의 법률이고 EU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2.2.1 EMAS의 목적

EMAS의 목적은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활동의 실적을 평가하여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일과 관련된 환경정보의 공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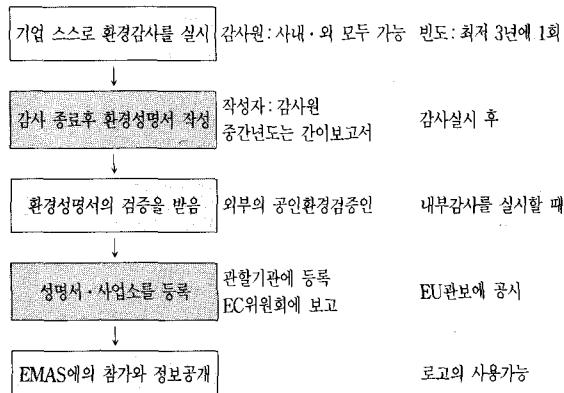
환경활동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일을 실시한다.

- a. 기업은 관련된 사업소를 고려한 환경방침, 프로그램,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실행한다.
- b. 이들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조직적, 객관적, 정기적 평가를 한다.
- c. 환경활동의 실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
(그림 10참조)



〈그림 10〉 EMAS의 전체구조

환경감사로부터 정보의 공개 과정을 보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EMAS 참여 흐름도

2.2.2. EMAS의 구성 및 내용

1) 구성

EMAS는 서문과 법률의 성격을 띤 본칙 21조와 부속서는 I ~ V로 구성되어 있다. 본칙은 운용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상세한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EMAS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EMAS의 구성

- 제1조 EMAS 및 그 목적(The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and its objectives)
- 제2조 정의(Definitions)
- 제3조 EMAS 참가(Participation in the scheme)
- 제4조 감사와 인증(Auditing and validation)
- 제5조 환경성명서(Environmental Statement)
- 제6조 환경검증인의 인정과 감독(Accreditation and supervision of environmental verifiers)
- 제7조 공인환경검증인의 인정과 감독(List of accredited environmental verifiers)
- 제8조 사업장의 등록(Registration of sites)
- 제9조 등록사업장의 목록공표(Publication of the list of registered sites)
- 제10조 참가성명(Statement of participation)
- 제11조 비용과 요금(Costs and fees)
- 제12조 각국, 유럽 및 국제표준과의 관계(Relationship with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제13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참가추진(Promotion of companies participation in particular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제14조 타분야에 적용(Inclusion of other sectors)

제15조 정보(Information)

제16조 위반(Infringements)

제17조 부속서(Annexes)

제18조 관할기관(Competent bodies)

제19조 위원회(Committee)

제20조 개정(Revision)

제21조 발효(Entry in to force)

부속서(Annex)

부속서 I 환경방침·계획·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요구사항

(Requirements concerning environmental policies, programmes and management systems)

부속서 II 환경감사에 관한 사항(Requirements concerning environmental auditing)

부속서 III 환경검증인의 인정과 검증인의 직무에 관한 요구사항(Requirements concerning the accreditation of environmental verifiers and the function of the verifier)

부속서 IV EMAS에의 참가 표명서(Statements of participation)

부속서 V 참가등록신청 또는 인증환경성명서 제출시에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할 정보(Information to provided to the competent bodies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submission of a subsequent validated environmental statement)

2) 내용

- a. EMAS에의 참가 단위는 사업소(Site) 단위이다.
- b. 참가하는 사업소는 다음 사항을 정비한다.
 - 1) 관련 환경법 규제를 모두 준수한다.
 - 2) 기업의 환경방침을 제정한다.
 - 3) 사업소의 초기환경심사를 한다.
 - 4) 환경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5) 부속서 I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환경영업체제를 도입한다.
 - 6) 환경감사를 스스로 실시하든가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 7) 환경성명서를 작성하여 공인환경검증인의 검증을

받는다.

8) 사업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할기관에 등록하고 공표한다.

c. 환경성명서

- 1) 사업소의 사업활동에 관한 기술
 - 2) 관련 사업활동에 관련될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 3) 에너지·원료·용수 사용량, 오염물질·폐기물의 배출량, 소음 기타 주요 환경부하를 개략적으로 수치화
 - 4) 환경활동실적에 관련된 기타 중요한 항목
 - 5) 사업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환경방침, 프로그램, 환경영향체제의 설명
 - 6) 다음 번 환경성명서의 제출기한
 - 7) 공인환경검증인의 이름
- 준법상황, 자발적인 환경목표에의 달성상황, 환경영향체제에의 적합상황 등을 수치,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며 향후 3년정도의 중기계획도 요구된다.

2.3. BS 7750

BS 7750은 BSI(영국규격협회)가 제정한 영국의 환경영향체제규격이다. BS 7750의 특징은 환경영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규격에서는 사업자의 환경영향체제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외부에 표명하는데는 제3자의 인증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규격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 있지 않다.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체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EU이사회규칙 EMAS는 BS 7750이나 ISO 14001과는 다른 법률이다. 법률이면서도 강제성 없이 자율적인 참여형태를 띤다. EMAS의 목적은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영향의 실적을 평가하여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일과 관련된 환경영보의 공개에 있다.

수치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조직 스스로가 정하지만 규제적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는다.

적합성을 평가하는 내부감사에서는 시스템의 유효성과 목표의 달성도 즉, 실적이 점검된다.

2.3.1. BS 7750의 요구사항

BS 7750의 요구사항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4.1. 환경영향체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4.2. 환경방침(Environmental Policy)
- 4.3. 조직 및 요원(Organization and Personal)
- 4.4. 환경영향(Environmental Effects)
 - 4.4.1. 의사소통(Communications)
 - 4.4.2.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and Register)
 - 4.4.3. 법규제 및 타방침상 요구사항의 등록(Register of Legislative, Regulatory and Other Policy Requirements)
- 4.5. 환경목적 및 목표(Environmental Objective and Targets)
- 4.6. 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 4.7. 환경영향매뉴얼과 문서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Manual and Documentation)
 - 4.7.1. 매뉴얼(Manual)
 - 4.7.2. 문서화(Documentation)
- 4.8. 환경관리실무(Operational Control)



- 4.8.1. 일반적 사항(General)
- 4.8.2. 실무적 관리(Control)
- 4.8.3. 검증, 환경측정 및 기능시험(Verification, Measurement and Testing)
- 4.8.4.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Non-Compliance and Corrective Action)
- 4.9. 환경관리기록(Environmental Management Records)
- 4.10. 환경영향의 감사(Environmental Management Audits)
 - 4.10.1. 일반적 사항(General)
 - 4.10.2. 감사계획(Audit Program)
 - 4.10.3. 감사절차와 방법(Audit Protocols and Procedures)
- 4.11. 경영자의 환경영향의 검토(Environmental Management Reviews)

이 항목만으로는 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Plan -Do-Check-Action으로 치환하여 보면 이해가 쉽다 (그림 12 참조).

① 환경영향평가의 항에서는 법규제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소의 현재의 환경영향요인과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목록화한다.

② 그 환경부하 항목과 요구사항에 관하여 사업소의 방침과 대조해 보면서 목적·목표를 정하고 달성계획을 작성한다. 여기까지가 「Plan」에 해당한다.

BS 7750의 특징은 환경영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규격에서는 사업자의 환경영향체계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외부에 표명하는데는 제3자의 인증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규격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 있지 않다.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체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③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를 하고 환경영향체계를 실행하고 여러가지 기록 등을 한다. 이것이 「Do」에 해당된다.

④ 점검과 내부감사를 통해 실적을 「점검(Check)」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⑤ 이상의 모든 사항을 경영자가 재검토한 후 방침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아간다. 이것이 「Action」에 해당된다.

2.4. BS 7750, EMAS, ISO 14001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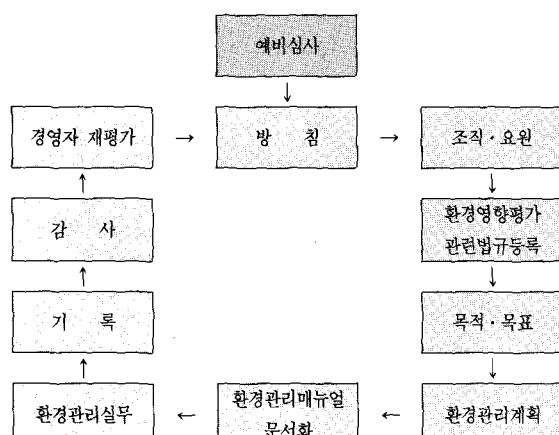
국제환경규범인 ISO 14000, BS 7750, EMAS를 비

〈표 4〉 ISO 14000, BS 7750, EMAS 비교

구분	ISO 14000	BS 7750	EMAS
발간년도 (시행년도)	1996 (1996)	1992 (1994) ¹⁾	1993 (1995) ²⁾
제정기관	국제표준협회	영국표준협회	유럽연합
주요 내용 차이점	환경경영체계, 심사		
인증절차	인증기관 선정후 신청 → 접수, 심사 → 인증서발급 → 사후심사		
적용범위	전세계	영국 및 영국 진출기업	유럽연합 기업 및 그 진출기업
적용대상	모든 조직, 영역, 활동		부지 및 산업활동에 국한
우리나라 대비현황	시범인증 실시 환경경영인증제도 도입(관련법령제정)	개별취득	대비없음

1) 1992년부터 시험실시후 1994년 정식발간

2) 1993년 공표 18개월후 시행



〈그림 12〉 BS 7750 환경감사의 흐름

교해 보면 환경영영체제와 심사부분, 인증절차가 공통적이고, 시행년도, 제정기관, 적용범위, 적용대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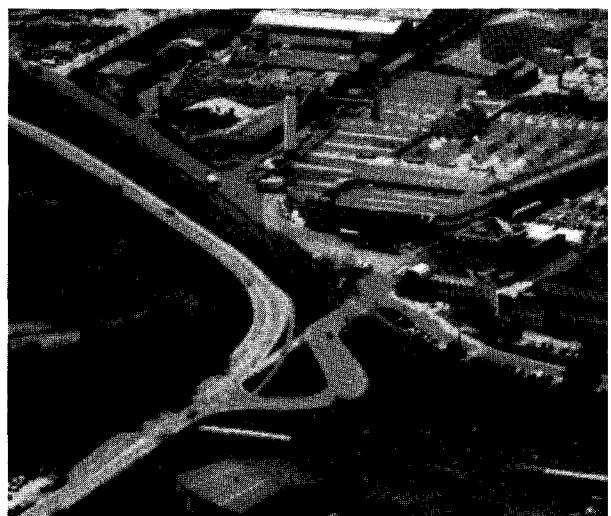
현재 ISO 14000은 전세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시범인증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를 하고 있고, 제일 먼저 시행된 BS 7750은 영국에 진출한 또는 하고자하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유럽연합의 EMAS에 대해서는 현재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은 환경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인류의 여타 목표와 조화를 이룬 환경보호는 지속적인 경제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반면에 능력있고 활력적이며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력을 갖춘 기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리, 기술 및 재정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이다. 기업인 주도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시장경제체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오늘날 환경보호는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세계 환경과 개발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Brundtland Commission)는 19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ICC는 전세계 기업의 환경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인 현장」을 작성했다. 이



3. 다른 환경영영 원칙 및 프로그램

환경경영체제가 현존하는 요구사항을 반영시킨 효과적인 경영체계가 되기 위하여는 환경영영원칙이나 유사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시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서는 민간단체, 정부에서 발의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3.1. ICC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현장(환경관리의 원칙)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 의해 채택된 기업현장(1990년 11월 27일 ICC 집행위원회에서 채택)의 배경, 전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현장은 지속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기업으로 볼 때 중요한 16개의 환경관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현장은 기업이 환경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완수토록 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이 현장은 제2차 세계산업환경관리회의(World Industry Council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WICEM, 1991년 4월 로테르담)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3.1.1. 전문(서언)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미래의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을 요구한다.

경제성장은 환경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인류의 여타 목표와 조화를 이룬 환경보호는 지속적인 경제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반면에 능

력있고 활력적이며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력을 갖춘 기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 한 관리, 기술 및 재정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이다. 기업인 주도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시장경제체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체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문제에 있어서 상충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시장의 원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2천년대에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중의 하나이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도전을 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체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기업체 지도자들은 기업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업종별 또는 종합적인 경제 단체를 통해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하게 하고 환경 관리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ICC는 기업과 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를 것과 이러한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 현장의 목적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그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경영방식을 정비함과 아울러 그 진행 사항을 측정하며, 이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적절히 보고하도록 하는데 있다.

3.1.2. 원칙

1) 회사의 우선목표(Corporate priority)

환경관리를 회사의 최우선 목표중의 하나로 또한 지속적인 성장의 주요 결정 요소로 인식하고, 기업 활동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을 설립한다.

2) 경영에의 통합(Integrated management)

제반 경영분야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을 기업체에 완전히 통합시킨다.

3) 개선의 과정(process of improvement)

기술 발전, 과학적인 지식, 소비자의 욕구 및 지역 공동체의 기대를 고려하고 법률적인 규정을 시발점으로 하여 기업의 정책, 프로그램 및 환경관리 실적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국제적으로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4) 종업원 교육(Employee education)

종업원이 환경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동기 유발을 시킨다.

5) 사전평가(Prior assessment)

신규 활동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특정 시설의 폐기나 특정 지역을 방치하기 전에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한다.

6) 제품 및 용역(Products and services)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며, 원 사용목적상 안정성이 고려되고,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활용에서 효율적이면서 재생, 재활용 또는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보급한다.

7) 고객의 조언(Consumer advice)

고객, 판매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된 물품의 안전한 사용, 운반, 저장 및 처리에 관해 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서비스 부분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다.

8) 시설 및 영업활동(Facilities and operations)

효율적인 에너지 및 원재료의 사용,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환경상의 악영향과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그리고 잔여 폐기물의 책임 처리를 고려하여 시설을 개발, 고안, 활용, 가동한다.

9) 연구(Research)

기업 활동과 관련된 원재료, 제품, 공정, 배출물 및 폐

알고 계십니까

우리말 속에 남아있는 언어공해, 일본어 특 생활 용어들을 순화합시다.

순화 대상 용어	순화한 용어
가교(假橋)	임시 다리
가납(假納)	임시 납부
가네자시(矩差)	곱자
가도(假道)	임시 도로
가도(角)	모서리, 모퉁이
가등기(假登記)	임시 등기
가디igan(カーディガン, 영=cardigan)	카디건
가라쿠(空-, 영=cushion)	민쿠션치기(당구)
가리코미(刈込)	① 깎기 ② 이발사
가매장(假埋葬)	임시 매장
가바야끼(蒲燒き)	장구이
가병(假病)	끼병
가빠(合羽, カッパ, 스=capa)	① 비옷 ② 덮개
가사용(假使用)	임시 사용
가성 소다(苛性ソーダ, 영=soda)	양잿물, 수산화나트륨
가수금(假受金)	임시 받은 돈
가승계(假承繼)	임시 승계
가압류(假押留)	임시 압류
가오 마담(顔-母, 영=madam)	얼굴 미담
가오다시(顔出し)	우두마리(상인)
가이리(かいり)	잔멸치
가이센(가이생)(回旋塔)	슬래잡기
가자리(飾り)	꾸밈, 장식
가주소(假住所)	임시 주소
가즈라(鬱)	기발, 다리(마리)
가집행(假執行)	임시 집행
가출(家出)	집나감
가케표(かけ(×)標)	기위표
가타가키(肩書)	직함
가타밥(가다밥)(型-)	틀밥, 찍은 밥
각하(却下)	물리침(법률 제외)
간식(間食)	셋밥, 새참, 군음식
감안(勘案)	생각, 고려, 참작
개소(個所)	군데
견포도(乾葡萄)	마른포도, 밀린포도
제비키(野引)	굼굿개
제양(揭揚)	닭, 올림
제코(정꼬)(檢擧)	징역 <은아>
견출장(見出帳)	찾아보기책
견출지(見出紙)	찾아보기표

기물이 미치는 환경상의 악영향과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수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10) 예방적인 조치(Precautionary approach)

심각하거나 회복시킬 수 없는 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사용을 과학 기술적 지식과 부합되도록 개조한다.

11) 계약자와 공급자(Contractors and suppliers)

기업의 활동을 대행하는 계약자가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관행이 기업의 관행과 일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한다. 또한 공급자들이 이러한 원칙을 보다 폭넓게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12) 비상사태의 준비(Emergency preparedness)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긴급사태 대비 기관, 관련 당국,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역과 국경을 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한 비상사태 준비 계획을 개발 유지한다.

13) 기술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산업 및 공공 분야 전제에 대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경영 기법의 이전에 기여한다.

14) 공동 노력에 기여(Contributing to the common effort)

환경에 관한 이해 증진과 환경보호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공 정책의 개발과 기업, 정부, 정부간의 차원에서 프로그램 및 교육 계획의 개발에 기여한다.

15) 우려사항에 대한 공개성의 유지(Openness to concerns)

종업원 또는 일반 대중에 대한 공개성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진하여 기업활동, 제품, 쓰레기 또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해악과 영향에 대한 이들의 우려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응한다.

16) 준수와 보고(Compliance and reporting)

환경관리 실적을 측정하고, 기업에 요구되는 사항의 준수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감사 및 평가를 하며, 주기적으로 이사회, 주주, 종업원, 관계 당국 및 일반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역주) 이 선언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usiness Char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dopted by the ICC Executive Board on 27 November, 1990